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249
----------	-------

발의연월일 : 2026. 4. 10.

발 의 자 : 윤종균 · 서영석 · 안태준
이성윤 · 이학영 · 진선미
노종면 · 민홍철 · 백혜련
문금주 · 박용갑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법, 「주택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입주자 대표 입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있음. 입주자 대표의 공동주택 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임.

현행법상 동법과 「주택법」 등 관련 법률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2년간 자격 제한이 있는 반면에, 공동주택 관리비를 횡령·배임하거나 권한을 남용해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해 벌금형을 받아도 입주자 대표 입후보 자격이 박탈되지 않음.

이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되어 「형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를 짓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확정일부터 2년간 입주자 대표 입후보를 불가하게 하여 입주자 대표의 자격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4조제4항제2호의2 신설 등).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형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죄만 해당한다)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4항제2호의2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동별 대표자에 대하여는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 ③ (생략) ④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2. (생략) <u><신설></u> 3. ~ 5. (생략) ⑤ ~ ⑫ (생략) <u><신설></u>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1. 2. (현행과 같음) 2의2. 「형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죄만 해당한다)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 5. (현행과 같음) ⑤ ~ ⑫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u>「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4항제2호의2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u>